

의안번호	제 442 호
의 결 연 월 일	2009년 12월 일 (제 285 회)

충청북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09년 11월 24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필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충청북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평생교육법」에서 위임된 충청북도 평생교육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평생교육협의회 구성 등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「평생교육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2조에 따라 평생교육 진흥 및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평생교육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협의회는 의장·부의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의장은 도지사가 되고, 부의장은 충청북도교육청 부교육감으로 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과 협의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.

1.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,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
2.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
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다만, 직위가 있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.

제3조(협의회 운영)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, 협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.

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.

제4조(수당 등)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5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.

제6조(평생교육진흥사업) ① 도지사는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충청북도교육청,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평생교육진흥원 설치 등) ① 도지사는 법 제20조에 따라 충청북도 평생교육진흥원(이하 “진흥원”이라 한다)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고 있는 기관 등을 진흥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진흥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자격, 구비서류 등 지정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도보 및 도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

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진흥원의 지정취소)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진흥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진흥원의 운영자가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때
2. 진흥원의 운영자가 지정조건을 위반한 때
3. 그 밖에 제9조에 따른 도지사의 지시를 위반한 때

제9조(지도·감독) ① 도지사는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가

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·감독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지도·감독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진흥원장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, 진흥원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10조(학습자 안전 보험가입)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보험 또는 공제사업 등 가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

1. 1명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
2. 사고건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

②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·신체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1조(다른 조례의 준용)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되는 경비는 「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련법령 발취

□ 평생교육법

제9조(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)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5년 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평생교육진흥의 중·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
2. 평생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
3.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
4. 평생교육진흥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, 시·도교육감 및 시장·군수, 자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1조(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 시·도지사는 제9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·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.

제12조(시·도 평생교육협의회) ①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·도지사 소속으로 시·도평생교육협의회(이하 “시·도 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시·도협의회는 의장·부의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시·도협회의의 의장은 시·도지사로 하고 부의장은 시·도의 부교육감으로 한다.

④ 시·도협의회 위원은 관계공무원, 평생교육관련 전문가, 평생교육

관계기관의 운영자 등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해당 시·도의 교육감과 협의하여 의장이 위촉한다.

⑤ 시·도협회의회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16조(경비보조 및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.

1. 평생교육기관의 설치·운영
2.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
3.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
4.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수행하는 사업 등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제20조(시·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) ① 시·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시·도평생교육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
2. 평생교육 상담
3.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
4.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 체제 구축
5.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·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28조 (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) ①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에 기여

하여야 한다.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.

1.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2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4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
5. 제42조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6.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

③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·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□ 평생교육법시행령

제3조(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평생교육업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안을 법 제10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위원회(이하 "진흥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.

③ 시·도지사는 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다음 해의 평생교육진흥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2조(시·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등)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·도지사가 시·도평생교육진흥원(이하 “시·도진흥원”이라 한다.)을 설치하거나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시·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.

② 시·도진흥원은 법 제20조제2항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하되, 그 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시설,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